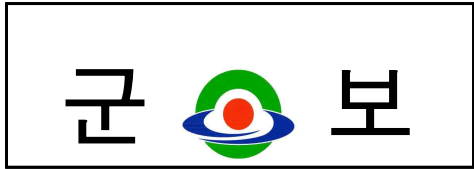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49호 2024. 8. 5.(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대한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03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06호)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예천군 보건소 고시 제2024-1호)

공 고

-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예천군 공고 제2024-121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대한변경)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4-103호로 고시된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5일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변경)

계 획 명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자	예천군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본·남본리 일원				면 적		230,428㎡ (163,220㎡)		
사업기간	당초 : 2021년 ~ 2024년 변경 : 2021년 ~ 2025년				유 형		일반근린형		
사 업 비 (억원)	구분	합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당초	277.20	72.00	48.00	58.19	29.41	47.84	11.76	10.0
	변경	323.23	72.00	48.00	58.19	29.41	93.87	11.76	10.0

활성화계획도(변경)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변경없음)

비전	단술(禮) 샘(泉)에 깃드는 새바람, 그리고 확실한 행복
목표	1.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지원 2. 기초생활 SOC확충을 통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육성 3. 범죄예방설계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③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내용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A-1-2 방문객 편의시설 및 지원확충	① 남본시장센터 조성(HW) (사업비) 공사비 1.2억원 → 공사비 2.2억원 (사업규모) A=60㎡(2층) → A=92㎡(2층) ② 온라인판매지원(SW) (사업비) 0.3억원 → 0억원	▶ 건축규모의 변경 및 단위면적당 조성비 상승에 따른 규모와 사업비 변경 ▶ 타부서 사업과 중복방지를 위해 감액
A-2-3 지역상권 공생프로그램	① 지역상권 공생프로그램 및 상인역량강화 교육(SW) (사업비) 4.00억원 → 2.00억원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	▶ 축산과 및 지역경제과 사업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비 감액 및 사업기간 연장
A-3-1 한우왕조 2000 조성	① 한우왕조 2000 조성(HW) (사업비) 조성비 56.01억원 → 조성비 92.00억원 (사업규모) 연면적 5,505㎡(4층) → 2,726.67㎡(2층)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	▶ 단위조성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사업 규모, 사업기간 변경
A-3-2 예천한우 판매·유통·홍보계획 수립지원	① 예천한우 판매·유통·홍보계획수립 지원(SW) (사업비) 1.50억원 → 0억원	▶ 타부서 사업과 중복방지를 위해 감액
A-3-3 이벤트·포토존 설치	① 이벤트·포토존 설치(SW) (사업비) 1.02억원 → 0억원	▶ 옥상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위한 사업비 변경
B-1-1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①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HW) (사업비) 조성비 37.55억원 → 조성비 55.05억원	▶ 23년 5월 준공에 따른 실집행 사업비로 사업비 변경
C-1-1 범죄환경안심거리 조성	① 범죄환경안심거리 조성(HW) (사업비) 3.37억원 → 1.13억원	▶ 예천경찰서 범죄예방컨설팅(22.1)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실집행 금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C-1-6 주민주도사업 및 역량강화	① 주민역량강화교육(SW) (사업비) 2.40억원 → 1.00억원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	▶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조정

④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자부비	공기업	기금	자체	
	합계	323.23	130.19	77.41	11.76	10.00	93.87	
	소계	182.91	72.00	48.00		10.00	52.91	
마중물 사업	매콤쌈싸름 남본시장 만들기	2.40	1.44	0.96				
	전통시장 환경개선	6.35	3.81	2.54				
	한우왕조2000조성	92.00	32.08	21.39		10.00	28.53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62.33	22.77	15.18			24.38	
	단샘어울림센터조성	10.75	6.45	4.30				
	더 좋은 단샘마을 만들기	9.08	5.45	3.63				
	소계	87.60	58.19	29.41				
부처 연계사업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70.00	49.00	21.00				
	예천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3.90	2.34	1.56				
	주차환경개선사업	13.70	6.85	6.85				
	소계	23.53			11.76		11.77	
공기업 투자사업	예천읍 지중화사업	23.53			11.76		11.77	
	소계	29.19					29.19	
지자체 사업	청년회관 설치 운영	5.00					5.0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00					4.00	
	매콤쌈싸름 남본시장 만들기 부지매입비	2.64					2.64	
	한우왕조2000 조성 부지매입비	11.99					11.99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5.56					5.56	
	소계	29.19					29.19	

⑤ 예산 집행 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 분	사 업 명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합계	'21	'22	'23	'24	'25	
합 계				18,291	1,249	4,429	3,914	4,620	4,079	
A. 지역특화 및 경쟁력 강화	(소 계)			10,075	167	92	1,744	4,173	3,899	
	A-1 매콤 쌉싸름 남분시장 만들기	방문객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부지매입, 진입로 개설	20	20	-	-	-	-	
			시장센터 개설·운영	220	-	-	-	220	-	
	A-2 전통시장 환경개선	상설시장2길 '차없는 거리' 조성 (이동식 매대제작·설치)		150	-	-	-	-	150	
		맛고을거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야간경관계획, 조명시설)		285	-	-	-	285	-	
		지역상권 공생프로그램 (상인역량강화교육)		200	-	-	-	100	100	
	A-3 한우왕조 2000조성	공공(상생협력) 임대상가조성		9,200	147	92	1,744	3,568	3,649	
	B. 공동체 활성화	(소 계)			7,308	1,082	4,210	1,888	78	50
B-1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6,193	121	4,210	1,856	6	-	
		작은도서관, 학습지도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20	-	-	12	8	-	
		마을문화쉼터 (서본1리 경로당 대체)		20	-	-	12	8	-	
B-2 단샘어울림 센터조성		단샘어울림센터 조성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961	961	-	-	-	-	
		단샘카페 및 역사문화전시관		94	-	-	-	44	50	
		시니어아카데미 및 다목적강당(조성)		20	-	-	8	12	-	
C. 생활환경 개선	(소 계)			908	-	127	282	369	130	
	C-1 더 좋은 단샘마을 만들기	범죄환경안심거리 조성 (스마트형CCTV, 가로등, 보안등)		113	-	113	-	-	-	
		한천로변 노후불량주택 철거 (쌈지공원, 쉼터조성)		200	-	-	200	-	-	
		공공시설물 개선	VMS설치	65	-	-	-	65	-	
			버스정류장	130	-	-	-	130	-	
		주민공모사업		300	-	-	69	131	100	
		주민역량강화		100	-	14	13	43	30	

⑥ 관련서류 열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4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54-650-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5일

예 천 군 수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지보	도장	산21-1	3,077	2024.08.05. ~ 2026.04.30.	47,129	정 대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5일

예 천 군 수

1. 지정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3. 지정일자: 2024. 8. 17.
4. 지정대상 및 범위
 - 대 상: 73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5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34개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4개소
 - ※ 향후 시설의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 범 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6. 고시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054-650-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유치원 현황(15개소)

연번	명칭	주소
1	새벗유치원	호명읍 양지1길 16
2	호명라운유치원	호명읍 봉호로 4241-6
3	단샘유치원	호명읍 행복2길 24
4	예천초병설유치원	예천읍 효자로 43
5	예천동부초병설유치원	예천읍 효자로 171
6	예천남부초병설유치원	예천읍 남부초등길 17
7	용문초병설유치원	용문면 금당실길 51-20
8	상리초병설유치원	효자면 도효자로 1558
9	은풍초병설유치원	은풍면 내동길 8
10	감천초병설유치원	감천면 충효로 1395
11	유천초병설유치원	유천면 유용로 34-10
12	용궁초병설유치원	용궁면 읍부1길 43
13	지보초병설유치원	지보면 지보리 136
14	풍양초병설유치원	풍양면 낙상1길 50-10
15	호명초병설유치원	호명읍 행복로 151

□ 어린이집 현황(34개소)

연번	명칭	주소
1	국공립동일행복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177 동일스위트 더파크(관리동)
2	국공립리움어린이집	호명읍 양지로 55 모아엘가 에듀파크(관리동)
3	국공립호반2차어린이집	호명읍 양지로 14 호반베르디움 2차(관리동)
4	국공립행복주택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111 LH아파트(관리동)
5	군립대심주공어린이집	예천읍 봉덕로 52 대심주공아파트
6	군립용문어린이집	용문면 금당실길 54
7	군립유천어린이집	유천면 예성로 358
8	군립풍양어린이집	풍양면 낙상2길 26-6
9	군립호명어린이집	호명읍 호명로 540
10	우방센텀어린이집	호명읍 검무로27 우방센텀(관리동)
11	성락어린이집	예천읍 효자로 196
12	성심어린이집	예천읍 충효로 209-28
13	도담어린이집	예천읍 충효로 273-1
14	아롱다롱어린이집	예천읍 구남골길 4

15	자연어린이집	예천읍 대심3길 47
16	고운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230 우방아이유셀 2차(관리동)
17	빛나는 별 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215 호반베르디움 1차(관리동)
18	아이파크어린이집	호명읍 새움3로 7 아이파크 아파트(관리동)
19	우방어린이집	호명읍 검무로 17 우방아이유셀 1차(관리동)
20	우방센트럴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229 우방아이유셀 5차(관리동)
21	아이원어린이집	호명읍 새움3로 7 102동 102호(아이파크아파트)
22	꿈터우방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230 205동 103호(우방아이유셀 2차)
23	하나 몬테소리어린이집	호명읍 검무로 27 310동 104호(우방아이유셀 3차)
24	어린이나라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229 510동 103호(우방아이유셀 5차)
25	아이팡팡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215 102동 101호(호반베르디움 1차)
26	호반어린이집	호명읍 양지로 14 209동 103호(호반베르디움 2차)
27	파스텔어린이집	호명읍 양지로 55 104동 104호(모아엘가 에듀파크)
28	도담숲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177 111동 104호(동일스위트 더파크)
29	동일스위트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177 120동 104호(동일스위트 더파크)
30	동일키즈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177 110동 102호(동일스위트 더파크)
31	소담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177 110동 104호(동일스위트 더파크)
32	해뜨는어린이집	호명읍 행복로 177 111동 103호(동일스위트 더파크)
33	예천군청어린이집	예천읍 충효로 111
34	예성어린이집	유천면 예성로 357 공군제16전투비행단 내

□ 초 · 중 · 고교 현황(24개소)

연번	명칭	주소
1	예천초등학교	예천읍 효자로 43
2	예천동부초등학교	예천읍 효자로 171
3	예천남부초등학교	예천읍 남부초등길 17
4	용문초등학교	용문면 금당실길 51-20
5	상리초등학교	효자면 도효자로 1558
6	은풍초등학교	은풍면 내동길 8
7	감천초등학교	감천면 충효로 1395
8	유천초등학교	유천면 유용로 34-10
9	용궁초등학교	용궁면 읍부1길 43
10	지보초등학교	지보면 지보로 136
11	풍양초등학교	풍양면 낙상1길 50-10
12	호명초등학교	호명읍 행복로 151

13	예천중학교	예천읍 예천중앙길 7
14	용궁중학교	용궁면 읍부1길 33
15	풍양중학교	풍양면 낙상1길 94
16	지보중학교	지보면 지보로 167-7
17	감천중학교	감천면 충효로 1429
18	용문중학교	용문면 상금시장길 45-2
19	예천여자중학교	예천읍 양궁로 53
20	대창중학교	예천읍 대창학교길 33
21	은풍중학교	은풍면 도효자로 1114-26
22	경북일고등학교	호명읍 행복로 193
23	예천여자고등학교	예천읍 효자로 205
24	대창고등학교	예천읍 대창학교길 33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추가 및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명 이상 미성년자가 있는 사람

나. 7급 이상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 하향(안 제8조)

- 8급 이하 시험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다.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안 제11조)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

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안 제14조)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임용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2)

- 임용점검방식, 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점검 결과 조치 등

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신설(안 제24조의2)

사.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 정비(안 별표 4)

- 전산직렬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직렬 시험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 해양수산(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 6·7급 기준 산업기사 추가
 - 항공(일반항공, 조종) : 6·7급 기준 산업기사(일반항공), 자가용 조종사(조종) 추가
 - 시설(지적) : 6·7급 기준 산업기사, 8·9급 기준 기능사 추가 등
 - 조리(조리) : 6·7급 기준 조리산업기사, 8·9급 기준 조리기능사 추가 등

아.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정비 및 경력요건 자율성 확대(안 별표 7)

-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대한 임용권자의 경력요건에 대한 자율성 부여

자.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8)

-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졸업자 등)로 수정

차.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 13)

-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 녹지직렬 자격증 추가(나무의사)

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별표 22)

타.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1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로 한다.

제4조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7~8”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 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를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사람이어야 하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
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
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
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횃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횃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횃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 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

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7조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를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로, “자여야”를 “사람이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7, 별표 8, 별표 13,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의2 별표22 개정규정 :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13의 녹지 직렬에 대한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2 별표 22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정기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녹지직렬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 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 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 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 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 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 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 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 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기능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벼짓중근,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산업기사 :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 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 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 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 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 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 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 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 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 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 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 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 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 정 평 가 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인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직업치료사(12) 원소취급사(특수) 가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인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치료사(8) 방사선사(일반)(3) 방사선사1급(3) 임상심리사1급(3)	인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치료사(5) 방사선사(일반)(1급) 방사선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인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청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청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청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청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청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시보조종사(5) 항공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 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6 및 별표7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6 및 별표7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6 및 별표7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6 및 별표7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6 및 별표7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이 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 용 : 수산물품질관 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 사, 약사, 한약 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 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 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 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 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 조사2급, 보건 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보 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경	수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3급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정,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정,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정,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정,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축산, 식품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기 사 : 축산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가산점 부여 기준 (제26조의2 관련)

1. 가산점 구분에 따른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관련조항	가산점 구분	부여대상	부여가점
제23조	자격증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21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점 ○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점
제24조	특수지 근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 특지·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25점 ○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8점 ○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3점
	교류직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공무원	교류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일로부터 1개월마다 0.1점
	영 제32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임용권자 가 범위, 대상 등을 따로 정하는 업무” - 상기의 업무를 담당 하는 직위에서 계급 의 변동 없이 2년 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 부여 - 최대 0.75점까지 부여
제25조의2	실적가산점	「예천군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별표 2에 의함	분야별 해당 점수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시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印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인	인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예천군수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9호서식]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illegible]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 ----- ----- ----- -----.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 시험 ·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 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 퇴직수당의 지급 2. <u>영 제21조의2</u>에 따른 수습직 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 의 임용 3. ~ 8. (생략)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u>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 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 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 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u>자</u>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 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 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 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 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 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 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에 합격한 <u>자</u>는 별표 1의 구비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 ----- -----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21조의2--- ----- 3. ~ 8.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 ----- --- <u>사람</u>에 ----- -----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 ----- <u>사람</u>은 ----- ----- ----- ----- ----- ----- -----. ② ----- ----- ----- <u>사람</u>은 ----- -----
--	---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 -----

 -----.

제6조(응시수수료) ① -----

 ----- 사람은 -----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
 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

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
 -----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
 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
 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

 ----- 사람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연령)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②
(생략)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
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
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
다.

④·⑤ (생략)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
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
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

----- 사람

은 -----

18세 이상이어야 -----

-----.

<삭 제>

<삭 제>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으로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
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

략)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과 같음)

④ -----
-----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 사람을 -----.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

-- 사람-----

-----.

1. -----
----- 사람
2. -----
----- 사람
3. -----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이 -----

---. -----
-----.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8에 의거 검정한다.

② (생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 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

--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지방공무

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삭 제>

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
· 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 다
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
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
 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하
 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
 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
 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② -----

 ----- 사람이 -----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생략)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

-----.

-----.

-----.

<삭 제>

④ 제2항-----

----- 사람-----.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밋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별표 3 및 별표 15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 3. (생략)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6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

및 지도직 규정 -----

-----.

1.-----

--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
----- 사람이어야 --.

2. · 3. (현행과 같음)

⑤ -----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사람이어야 하며, -----

----- 경우 -----
-----.

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⑧ (생략)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 설>

⑥ -----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사람의 -----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
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
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
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

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
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
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
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
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
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
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

	<u>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u>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u>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u> 3. 별도 법령에 따라 <u>경력경쟁 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u>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u>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u>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u>필요한 조치</u>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생략)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7조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 사람은 -----

----- 사람이어야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3.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
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
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② (생략)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
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④ (생략)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
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6의2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
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3호 -----

-----.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
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
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
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
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
 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
 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
 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
 의 합격자의 등록) ① -----
 ----- 사람이 -

 -----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행정경력이 많은 자

3.병역을 필한 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

② -----
--- 사람은 -----

-----.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이 -----

-----.

③ -----

-----.

1.-----

사람

2.----- 사람

3.-----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
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
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
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
험의 횡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
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
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생
략)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
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
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

-----.

-----.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9호 서식-----

-----.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
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현행
과 같음)

② -----

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 .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u>직급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 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u> <u>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 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u> <u>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u>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u>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u>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와 같다.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 <u>연구 및 지도직 규정</u> ----- ----- -----.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 ----- ----- -----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생략)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
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
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
다.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
용) ① (생략)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
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
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
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사람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
람은 -----
--.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령」 제23조-----
--- 사람이여야 -----
-----.

③ -----
----- 사람은 -----
-----.

1. -----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u>자</u> 2.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u>자</u>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u>자</u>	----- ----- <u>사</u> <u>람</u> 2. (현행과 같음) ④ ----- ----- -----. 1. ----- -- <u>사람</u> 2. ----- ----- <u>사람</u>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 ⑧ (생략)

제64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

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2020. 9. 10.>

③ 삭제 <2020. 9. 10.>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삭제 <2020. 9. 10.>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